

가정 쓰레기 분리수거

쓰레기 분리수거 기본 규칙

- 아침 8시 30분까지 내주세요.
- 한 변의 길이가 30센티미터를 넘는 것은 원칙적으로 '대형 쓰레기'입니다.
- 수거일 이외의 날이나 수거 후에는 버리지 마십시오.

쓰레기의 종류	쓰레기 수거방법
---------	----------

가연성쓰레기

- ◆음식쓰레기: 식재료의 껍질, 뼈, 잔밥, 달걀껍질, 조개껍질, 보냉제, 고휘유(굳은기름) 등
 
- ◆종이 및 섬유류: 종이기저귀, 영수증, 종이팩(1000ml 미만), 세제의상자, 속옷, 양말, 봉제인형, 고무장갑 등
- ◆피혁류: 가방, 신발, 샌들, 벨트, 슬리퍼 등
 
- ◆목제품: 나무블럭, 연필, 나무젓가락 등
- ◆식물류: 예외 ②·③ 참조

주 3회 ()·()·() 요일 ※수거일이 공휴일이라도 수거가능

- ◆**핑크색 지정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십시오.**
- ◇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 아래 2지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①요리재료 낭비, 식품 낭비를 줄여주세요.
 - ②쓰레기는 수분을 짜낸 후 버려주세요.
- ◆**과자의 빈 상자 등은 「재활용」으로 버려주세요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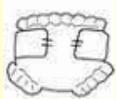


예외적으로 지정 쓰레기 봉투 이외에도 버릴 수 있는 가연 쓰레기

예외① 종이 기저귀(애완동물용 제외)

지정 가연성쓰레기봉투 또는 투명내용물이 보이는 봉투(50L 이하)에 넣어서 버릴 수 있습니다.

- ※ 배설물은 화장실에 버려주세요.
- ※ 위생면에서 가능한 한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로 이중으로 해서 버려주세요.



예외② 풀·잎·잔가지·줄기

지정가연성 쓰레기봉투 또는 투명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(50L 이하)에 넣어 버릴 수 있습니다.



예외③ 전지(가지치기) 등

전지는 굵기 5cm 이하, 길이 50cm 이하로 잘 한뭉음을 지름 30cm 정도 끈으로 묶어 버리세요.

- ※ 두께 6cm~15cm, 길이 51cm~150cm까지의 것은, 「대형 쓰레기」입니다.
- ※가지치기한 브런치에서 앞을제거하다



플라스틱 비닐류.

- ◆플라스틱 봉투: 과자 봉지, 비닐봉투 등
- ◆팩 종류 : 계란 팩, 낫또 팩, 디저트 컵 등
- ◆용기류: 도시락 용기, 인스턴트식품 용기, 세척용기 등
- ◆기타: 스티로폼, 완충재, 음식쟁반, 식품용 랩, 필름, 비닐 장갑, 용기류의 캡(뚜껑)·라벨 등
- ◆제품 플라스틱 : 칫솔, 빨대, 빗, 양동이, 태퍼, 플라스틱 옷걸이, 등

*2024년 10월부터, 제품 플라스틱의 일부를 '프 플라스틱 비닐류'로서 회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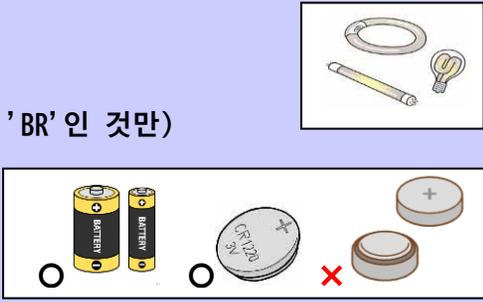
주 1회()요일 ※수거일이 공휴일이라도 수거가능

- ◇ **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를 사용하십시오.**
- ※다른 시의 쓰레기 봉투나 시에서 지정한 현 쓰레기 봉투는(구 가연 쓰레기 봉투도)사용할 수 없습니다
- ◇플라스틱은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.
 - 재활용 품질 향상을 위해 물에 행귀 얼룩을 제거한 후 버려주세요.
 - ※ 물로 행귀도 오염이 심한 경우 가연성 쓰레기로 버려주세요.
- ◇플라스틱 마크 
 - ※ 마크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
- ◇ **제품 플라스틱으로서 회수할 수 있는 것은, 원재료가 플라스틱이며, 금속류·건전지나 충전식 전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한정합니다.**



재활용품		주 1 회()요일 ※수거일이 공휴일이라도 수거가능	
◆병류: 식품용병 (술, 잼, 주스, 영양드링크, 이유식) 등) : 조미료병 (식용유, 식초, 증화요리 조미료 등) 	◆안을 행구어 전용 컨테이너에 넣어주세요 ◇ 캔은 가능한 한 짜그러트려 주세요 ◇ 의약품·화장품 등의 병, 스프레이·도료·모기향의 캔 등은 ' 불연쓰레기 '가 됩니다. ◇ 식품용 캔도 18L 강통, 드럼통은 ' 대형쓰레기 '입니다	컨테이너(용기) 등의 분류	
		무색 병	흰색컨테이너
◆캔류: 음식물 캔 (차, 주스, 술, 과자, 커피콩, 가루우유, 과일등의 통조림 등) 애완동물 사료 강통 병 등의 금속제 뚜껑 	◆ 안을 행군 후 전용 네트(오렌지색)에 넣어주세요. ◇뚜껑과 라벨을 제거하고, 가능한 한 으깨서 짜그러트려 주세요 뚜껑과 라벨은 「플라스틱·비닐류」입니다. 	갈색 병	갈색콘테이너
		녹색, 파란색 병	파란색 콘테이너
◆페트병: 'PET1' 표시가 있는 것 	◆ 품목마다 끈으로 십자로 묶어서 내놓으세요. 작은 잡종이는 그대로 ' 잡종이 수거용 망주머니(녹색) '에 넣어 꺼내주세요. ◇ 종이팩에서도 1000ml 미만인 것, 방수 가공이 되어 있는 것 등은 ' 가연쓰레기 '가 됩니다. ◇ 속옷, 매트류(30cm 이하), 가죽, 솜, 비닐로 된 현옷은, 섬유류가 아닌 ' 가연쓰레기 '입니다. ◇ 카페트, 매트류 (30cm 이상), 레이스 커튼, 침구류 (담요 등)는 섬유류가 아니라 ' 대형 쓰레기 '입니다. ◇ 재활용 품질 향상을 위하여 비오는 날은 낱은 꺼내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.   	◆ 병류: 식품용병 (술, 잼, 주스, 영양드링크, 이유식) 등) : 조미료병 (식용유, 식초, 증화요리 조미료 등)	
◆ 폐지류 : 신문(신문, 전단지 등) : 잡지류(서적, 카탈로그, 주간지, 복사용지· 두꺼운 종이 등) : 골판지(골판지 ※ 중간 심 있는 것) : 종이팩(우유 등 음식용으로 1000ml 인 것) : 잡종이(과자 상자, 종이 봉투, 포장지, 메모지 달력 ※부속품은 제외하고, 휴지심 등)		◆ 섬유류 : 현옷, 스웨터, 시트, 수건, 커튼 등 (레이스 커튼 제외)	◆ 폐식유 : 옥수수기름, 참기름, 쌀기름, 유채기름 해바라기유, 식용유 등 
◆ 사용한 기름은 ①식혀서 남은 찌꺼기 등을 제거한다 ②페트병 등의 내용물이 보이는 용기에 옮겨 담아 뚜껑을 덮는다 ③파란색 컨테이너에 세워 놓는다 ◆버터, 마가린, 라드유(돼지기름) 등의 동물성 기름, 엔진오일 등의 기계유는 수거할 수 없습니다. ◇ 가정에서 사용한 것, 유통기한이 지난 기름이 대상입니다.	◆유리·도자기류 : 공기, 접시, 컵, 화분, 꽃병, 거울, 화장품병 재떨이 등 ◆ 소형 전기제품 : 다리미, 손전등, 카메라 등 ◆ 가정잡화 : CD·DVD(케이스 포함), 칼, 면도칼, 밀폐용기, 일회용라이터 등 ◆ 일회용 부탄가스 : 일회용 부탄가스, 스프레이통 등 ◆ 문방구류 : 컴퍼스, 자, 볼펜 등 ◆기타 : 어린이 장난감, 알루미늄 호일, 백열·LED 전구 등 ◆30cm 이상도 수거 가능: 우산, 손잡이냄비, 후라이팬, 옷걸이 등		

불연성쓰레기		월 1 회 제()요일 ※ 수거일이 공휴일이라도 수거가능	
◆유리·도자기류 : 공기, 접시, 컵, 화분, 꽃병, 거울, 화장품병 재떨이 등 ◆ 소형 전기제품 : 다리미, 손전등, 카메라 등 ◆ 가정잡화 : CD·DVD(케이스 포함), 칼, 면도칼, 밀폐용기, 일회용라이터 등 ◆ 일회용 부탄가스 : 일회용 부탄가스, 스프레이통 등 ◆ 문방구류 : 컴퍼스, 자, 볼펜 등 ◆기타 : 어린이 장난감, 알루미늄 호일, 백열·LED 전구 등 ◆30cm 이상도 수거 가능: 우산, 손잡이냄비, 후라이팬, 옷걸이 등	◆오렌지색 지정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십시오. ◇ 칼이나 깨진 유리 등 위험한 것은 신문지로 싸는 등 위험 방지 처리를 하여 버려 주세요. ◇일회용 부탄가스나 스프레이 캔은 구멍을 뚫어 가스를 전량 배출 후 버려주세요. ◇라이터는 내용물을 다 쓴 후에 버려 주세요. 		

유해쓰레기	월 1회 제()요일
<p>◆건전지</p> <p>◆동전형 리튬전지 (형식 번호가 'CR' 또는 'BR' 인 것만)</p> <p>◆ 형광등</p> <p>◆수은사용제품 (체온계, 혈압계 등)</p> 	<p>◆유해쓰레기분리수거장(집적소)에 있는전용용기(빨간칸)에넣어주세요.</p> <p>※ 유해 쓰레기 수거는 일부 쓰레기 분리수거장(집적소)에서만 실시합니다.</p> <p>유해 쓰레기 분리 수거장(집적소)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클린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.</p> <p>◆버튼형 전지, 소형 충전식 전지 등은 회수 협력업체에 반입해 주십시오.</p>

대형쓰레기	클린센터 반입 또는 개별(방문) 수거
<p>◆ 가전류 : 청소기, 전자레인지, 스토브, 선풍기, 스테레오, 가스레인지, 가습기, 공기청정기 등</p> <p>◆ 가구 및 침구류 : 의자, 의상 케이스, 사이드 보드, 책상, 카펫, 소파, 옷장, 찬장 등</p> <p>◆기타 : 외발자전거, 아이스박스, 골프도구, 스키도구 자전거(전동식은 배터리 제외), 타이어, 다다미, 오토바이(50cc 까지), 유모차 등</p>	<p>◆자가용차 등으로 클린센터에 직접 반입 [요금 : 10Kg 까지 당 200 엔] 직접 반입 접수 시간 월요일~금요일(오전) 9시~11시 30분(오후) 13시~16시 토요일 ※ 오전만 9시~11시 30분 ※ 일요일, 공휴일, 연말연시제외 ※ 반입시 신분증 지참해주세요</p> <p>◆ 클린 센터에 호별 수집을 의뢰하다 [호별 수집 요금은 무게 기준이 아니라 품목별 요금입니다] 클린센터에 전화로 예약하기 ☎ 043-432-8527 예약접수시간 월요일~금요일 8시 30분~17시 15분 토요일 ※오전에만 8시 30분~12시 ※ 일, 공휴일, 연말연시 제외</p> <p>◆쓰레기 분리 수거장(집적소)에는 버릴 수 없습니다. ◆냉장고, 세탁기, TV, 에어컨 등 일부 가전제품은 시에서 처분할 수 없습니다.</p>

지역별 수거 요일 일람		월	화	수	목	금	토
A 지구		가연쓰레기 【제 2(4)】 유해쓰레기	플라스틱·비닐류	가연쓰레기	재활용품	가연쓰레기	【제 1】 불연쓰레기
B 지구		가연쓰레기 【제 2(4)】 有害ごみ	재활용품	가연쓰레기	플라스틱·비닐류	가연쓰레기	【제 2】 불연쓰레기
C 지구		【제 3】 불연쓰레기 【제 1(3)】 有害ごみ	가연쓰레기	플라스틱·비닐류	가연쓰레기	재활용품	가연쓰레기
D 지구		【제 4】 불연쓰레기 【제 1 (3)】 유해쓰레기	가연쓰레기	재활용품	가연쓰레기	플라스틱·비닐류	가연쓰레기

주의사항

◆**쓰레기 분리수거장(집적소)간판(A,B,C,D)을 보고 쓰레기종류와 수거일자를 확인해주세요.**

※ 유해 쓰레기 수거일이 공휴일인 경우, ()에 기재된 날이 수거일이 됩니다.
(예: [제 1(3)월] ⇒ 첫째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, 셋째 월요일이 수거일이 됩니다.)

※ 유해 쓰레기 이외(가연 쓰레기, 플라스틱·비닐쓰레기, 불연 쓰레기, 재활용품) 공휴일에도 수거합니다. (연말연시를 제외함)

시에서 처분할 수 없는 쓰레기

가전 재활용법 대상 품목(유료)

가전 재활용법이란, 사용되지 않게 된 가전제품을 적정하게 처리해, 자원의 유효 이용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.

대상 품목 냉장고·냉동고, 세탁기, 의류 건조기, 텔레비전, 에어컨

◇ 구입(교체)의 경우

구입(교체)한 점포에서 재활용권 구입 및 인수 절차를 밟으세요.

◇ 구입(교체) **이외의 경우**

우체국에서 재활용권을 구입하여 '지정 인수장소'에 반입하거나 '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업자'에게 수거를 의뢰해주세요.

지정 인수 장소		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업자			
리버(주)지바사업소 치바시 이나게구 롯포우초 210 ☎ 043-423-1148	일본통운(주)지바히가시지점 사쿠라시다이사쿠 1-8-7 ☎ 043-498-0856	(유)아사히 리사이클☎ 043-421-3766	(주)환경서비스 ☎ 043-423-8272	공동재활용(주) ☎ 043-422-9643	(주)요츠카이도기업 ☎ 043-423-0399

※요금은 가전재활용권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☎ 0120-319-640)

※ '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업자'의 수거는 유료입니다. (업체에 따라 요금이 다릅니다)

사업용 쓰레기

음식점이나 사업장 등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폐기물처리법이나 시 조례에 따라 '**자가처분**'해야 합니다.

※예를 들어, 업자가 집 리모델링 등을 해서 생긴 폐자재 등에 대해서도, 사업용 쓰레기입니다. 개인이 처분하지 말고, 반드시 작업을 실시한 업체에 인수와 처분을 의뢰해 주십시오.

각종 문의처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요츠카이도시 환경부 클린 센터 ☎043-432-8527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것 ○ 대형 쓰레기 수거에 관한 것 ○쓰레기 분리수거장(집적소)에 배출된 쓰레기에 관한 것 ○불법 투기에 관한 것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요츠카이도시 환경부 폐기물 대책과 ☎043-421-6132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쓰레기 감량·재활용에 관한 것 ○불법 투기에 관한 것 ○가정 쓰레기 처리 수수료 제도에 관한 것
--	---